2. 住宅建設促進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61號 1994. 8. 16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본문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7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도시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시·도의 도지사에게"를 "시·도의 도지사 및 등록주택사업자협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건축허가서 사본과 준공검사필증 사본을"을 "건축허가서 사본을"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①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당해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을 지급일로 한다"를 "한국주택은행장으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은"을 "입주자저축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1세대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의"를국민주택등의"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직할시·시·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청약저축취급기관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이상 10만원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①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에 있는 청약예금취급기관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제14조의6·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등) ①입주

자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3.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주택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5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경우 및 청약예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약과 동시에 동일금액의 청약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1의 2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입주자저축실적등의 보고) ①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입주희망지역·시기 및 주택의 규모등(이하 "입주희망사항"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및 입주희망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사전결정의 신청등) ①영 제3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각 필지의 도시계획확인원
2. 건축물의 종·횡단면도
3. 대지조성 계획도
4. 옹벽 및 석축계획도
5. 건축물의 색채기본계획도
6. 투시도

7. 현황사진

③영 제3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통지는 별지 제27조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의4제4항제2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결정통지일부터 2년을 말한다.

제18조의3(복합건축물의 주택규모)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라함은 주거용 연면적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계획확인원(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유형별·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영업정지 기타"를 "영업정지·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단위규모 및 대지지분의 변경"을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2퍼센트이내의 증감을 제외한다)의 변경"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단위규모"를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사용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영 제3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의4(감리자의 지정등) ①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

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5(감리원의자격등) ①영 제34조의6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②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배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계
2. 건축물의 중간검사신청서
3.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②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7(감리대가의 지급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비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감리비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당해 공사착수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생하는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사감리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중 "별지 제33호의4서식"을 "별지 제33호의5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세대주의 질별치료를 위하여"를 "세대원의 질병치료·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6.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제32조의2제2항 본문중 "영 제42조제8항의"를 "법 제44조제9항의"로, "영 제4조의2제1호에"를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영 제4조의2제5호에"를 "영 제4조의2제1항제5호에"로 한다.

4.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 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안전진단의 의뢰등) ①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2.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안전진단 수수료)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25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신청합니다"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⑨기술자보유현황란의 분야 별란중 "기술분야"를 "기계분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신청인란중 "건축허가신청일자"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자"로 하고, "건축허가일자 및 번호"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자 및 번호"로 하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자 및 번호"로 하며, "준공검사일자 및 번호"를 "사용검사일자 및 번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뒷쪽 구비서류의 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를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로 하고, 동란제4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4호의"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의"로 하며, 동란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제9호중 "영 제34조의2"를 "영 제34조의4"로 한다.

5. 도시계획확인원 1부(사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1부
7. 대지조성계획도 1부(대지조성을 우선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7서식〕란외의 기재사항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중 "등록(지정)번호"를 "등록번호"로 하고, "준공"을 "사용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28호의2서식〕·〔별지 제30호서

[별지 제15호서식]

영업실적 및 계획과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인				
	①사 업 자 구 분	□ 등록업자 □ 지정업자	□ 주택건설 □ 대지조성	
	②등록(지정)번호		③상 호	
	④대 표 자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⑦ 전년도 영업실적

연 도	구 분	유 형	규 모	구 조	층 수	동 수	세대수	사업비	대지면적	사 업 위 치

30304-18121일
'94.7.28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⑧ 당해연도 영업계획

연 도	구 분	유 형	규 모	구 조	층 수	동 수	세대수	사업비	대지면적	사 업 위 치	착공일	준공일

⑨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합계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안전관리분야			비고
		건축사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보유인원																		

※ 작성요령
1. 영업실적은 연도단위로 기재하되 등록 또는 지정 당해연도는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재함
2. 구분란에는 주택건설(임대·분양·기타) 또는 대지조성으로 기재함 (기타는 그 내역을 명기)
3. 유형란에는 단독·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함
4. 규모란에는 주택의 단위규모(세대별 전용면적)를 제곱미터로 기재함
5.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함
6.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함

30304-18122일
'94.7.28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16호서식〕

영업실적 및 계획과 기술인력보유현황 보고서

(○○시·도)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

발 신 : 년 월 일
협회장 (인)

구 분	①전년도 영업실적						②당해연도 영업계획						③기술인력 보유현황					
	④주택건설				⑤대지조성		⑥주택건설				⑦대지조성		건기술사	건기술자	토목기술자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안전기술자
	구분	유형	규모	세대수	건수	면적	구분	유형	규모	세대수	건수	면적						
합 계																		
업체명																		

첨부서류 : 업체별 보유기술인력 명세서

30304-18211보
'94.7.28 승인

297㎜ × 210㎜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6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상 호	
	③주 소		(전화)	

건설규모	아파트	층	동	동	세대	평형	세대
	상 가	층	동	동	평	국민주택비율	%
대지조건	④위 치				⑧지목·면적		㎡
	⑤지역·지구						
주택의 규모 및 층수	⑦건축 면적	㎡			⑨연 면 적		㎡
	⑨용 적 율	%			⑩건 폐 율		%
	⑪건축물최고높이				⑫층 수	지상( )층/지하( )층	
건입도로, 상하수도의 위치와 규모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 토지형질변경허가	유( ) 무( )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유( ) 무( )	
- 산림훼손허가	유( ) 무( )				- 공장건축허가	유( ) 무( )	
- 농지전용허가	유( ) 무(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유( ) 무( )	
- 사도개설허가	유( ) 무( )				용도변경허가		
- 도로점용허가	유( ) 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도 2.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의 위치와 규모 및 설치계획 3. 기 타	수수료	없 음

30304-18311번
'94.7.28 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7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서

신청인	①대표자		②상 호	
	③주 소	(전화)		
건설규호	아파트 층 동 세대 평형 세대 상 가 층 동 평 국민주택비율 %			
대지조건	④위 치			
	⑤지역·지구		⑥지목·면적	㎡
주택의 배치 및 층수	⑦건축 면적	㎡	⑧연 면 적	㎡
	⑨용 적 율	%	⑩건 폐 율	%
	⑪건축물최고높이		⑫층 수	지상( )층/지하( )층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사업승인신청시 보완사항				

재 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18411일
'94.7.28 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8호의2서식〕

☐ 주택건설
☐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1. 대 지

①위 치	②면 적	③지역지구	④지 목	⑤대지폭(m)	⑥등기명의자
				최저폭 최고폭	
⑦대지현황					
⑧주변현황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에는 필지별로 기재하되(제곱미터) 다수필지일 경우에는 필지면적의 크기 순으로 기재함
2. ④란에는 지적법상 지목을 ③란에는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구분하여 기재함
3. ⑦란에는 기존건축물의 유무, 대지형태,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 고도, 경사각도, 입목유무등 현황을 기재함
4. ⑧란에는 주변 100m이내의 주변사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함

2805-01-46(6-1)A
'80.10.6 승인

190㎜ × 268㎜
(신문용지 54g/㎡)

2. 주 택

형 별	세대당규모 ①전용면적	②공용면적	③계	④건축면적	⑤세대수	⑥동수	⑦층수	⑧구조	⑨건축연면적	공사기간 ⑩착공	⑪준공

	⑫침 실		⑬부 엌		⑭변 소		⑮거 실		⑯목욕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동 별	⑰층고	⑱최고높이	⑲반자높이	⑳계단의유효폭	㉑복도의폭	㉒지하면적
구 조						

㉓부속건축물			
㉔외벽의두께		㉕인접세대와의사이벽의두께	
㉖지붕의구조			

2805-01-46(6-2)A
'80.10.6 승인

190㎜ × 268㎜
(신문용지 54g/㎡)

3. 사업비 및 자금계획

①구 분	②사업비계	주택건설사업비					⑧일반분양시설설치
		③대지비	④주택건축비	⑤부대복리시설설치비	⑥간선시설설치비	⑦계	
⑨자금계획	⑩자금계	⑪사업주체자금	⑫국민주택자금	⑬금융기관융자금	⑭기타자금	⑮비 고	

※ 기재상 유의사항

1. ①란에는 단지별 또는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단지 또는 공구명을 기재함
2. ⑧란 (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에는 해당시설용지비를 포함시키되 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 연면적 비율로 산정함
3. ⑮란에는 기타 자금의 내역을 명기함

2805-01-46(6-3)A
'80.10.6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4. 부대시설 설치계획

종 류		① 현 황	설치계획	
			② 단지내	③ 단지외
④전 기				
⑤도 로				
⑥상하수도				
⑦통신시설				
⑧공중변소				
⑨주 차 장				
⑩우편시설				
⑪관리사무소				
⑫보 안 등				
⑬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기재상 유의사항

1. ③란에는 영[별표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에 따른 설치계획을 기재함
2. ④란에는 세대별 용량과 전력량계 설치여부등을 기재함
3. ⑤란에는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설치개소·폭·길이등을 기재함
4. ⑦란에는 세대별 전화국인입선의 설치여부와 공중전화의 설치여부를 기재함
5. ⑫란에는 기존시설의 단지로부터의 거리, 확보된 대지의 면적등을 기재함

2805-01-46(6-2)A
'80.10.6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5. 복리시설 설치계획

종 류	① 설 치 계 획
② 어린이 놀이터	
③ 집 회 소	
④ 운 동 장	
⑤ 비상저수시설	
⑥ 공원 또는 녹지시설	
⑦ TV 공청시설	
⑧ 공동 저탄장 시설	
⑨ 노 인 정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항목별로 명기함
2. 시설설치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각란에 그 사유를 명기함

2805-01-46(6-5)A
'80.10.6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6. 일반분양시설 설치계획

종 류	① 설 치 계 획
② 판 매 시 설	
③ 의 료 시 설	
④ 공 중 목 욕 탕	
⑤ 체 육 시 설	

※ 기재상 유의사항

1. ①란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항목별로 명기함
2. 시설설치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각란에 그 사유를 명기함

2805-01-46(6-6)A
'80.10.6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결과보고서(년 월분)

분류기호 보고일자 : 년 월 일

수 신 : 건설부장관 발 신 : 인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분	① 사업주체			②	③ 사업내용								④ 사업기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위치	구분	유형	규모	동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사업비	사업승인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30304-18521보
'94.7.28 승인

297㎜ × 210㎜
(인쇄용지(2급) 60g/㎡)

2.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당초 --- 변경	------	------	------	------	----	----	----	----	------	------	------	------	------	------	------

첨 부 : 주택건설실적 보고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개재함
2. 사업내용의 구분란에는 주택건설(임대·분양·기타) 또는 대지조성으로 기재함(기타는 그 내역을 명기)
3. 유형란에는 단독·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함
4. 규모란에는 주택의 단위규모(세대별 전용면적)를 제곱미터로 기재함

30304-18522보
'94.7.28 승인

297㎜ × 210㎜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0호의2서식〕

주택건설실적보고서

1. 주택건설현황 (총괄)

사·군별	연간계획	금월계획	누계실적	월별 주택건설실적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작성요령 1. 대수선 및 증·개축은 건설실적에서 제외함
2. 건설실적은 사업계획승인호수(세대수)와 건축허가호수를 합산함
3.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취소의 경우는 당월실적에서 정산함

30304-18641보
'94. 7. 28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2. 사업주체별·유형별 현황 (당월)

구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소계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주택공사														
지자체														
기타														

※ 작성요령 1. 공공부문은 정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함
2. 기타부문은 등록업자·지정업자·도시재개발·주택조합·농촌주택개량 및 개인이 건설한 주택으로 함

3. 공공부문 유형별·사업주체별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유형별	소계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주체별	소계													
	주택공사													
	지자체													
	기타													

30304-18642보
'94. 7. 28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4. 형태별·사업주체별 현황

구분	형태별현황								주체별현황								
	계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계	주택공사	지자체	지정업자	등록업자	주택조합	도시재개발	농촌주택	개인
		소계 ①+②	단독주택 ①	동수②	세대수												
계																	
전월계																	
금월																	

※ 작성요령 1.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며 1동을 1호로 계상함
2. 지정업자·등록업자란에는 자체사업실적만을 계상함 (도급실적과 공동사업주체로서 건설한 실적은 제외)

5. 유형별·시공주체별 현황 (당월)

구분		계	지정업자			등록업자			개인
			소계	자기공사	도급및공동사업주체	소계	자기공사	도급및공동사업주체	
합계									
공공부문	소계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부문									

30304-18643보
'94.7.28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6. 근로자주택 건설·공급실적

(단위 : 세대)

①연도별/사업주체별		②유형별	③물량배정	④사업승인	⑤분양			⑨미분양	⑩분양미개시
					⑥사원임대	⑦근로복지	⑧일반분양		
누계 (당해년도)		계							
		사원임대							
		근로복지							
년월분	지자체	계 사원임대 근로복지							
	주택공사	계 사원임대 근로복지							
	주택업자	계 사원임대 근로복지							
	고용자	계 사원임대 근로복지							

※ 작성요령 1. ①란의 연도구분은 ④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⑤의 경우는 분양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함
2. ⑥, ⑦, ⑧란은 유형별로 실제 분양된 세대수를 기재하며, ( )에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한 세대수를 기재함
3. ③란에는 ④ - (⑤ + ⑦ + ⑧)의 세대수를 기재함
4. ⑩란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을 개시하지 아니한 세대수를 기재함

30304-18644보
'94.7.28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3호서식]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처리기간 7일
사업시행자	①상 호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 표 자		④주 소		
설계자	⑤상 호		⑥등록번호	제 호	
	⑦대 표 자		⑧주 소		
공사감리자	⑨상 호		⑩등록번호	제 호	
	⑪대 표 자		⑫주 소		
	⑬상주감리자		⑭보유자격	종류 번호	
공사시공자	⑮상 호		⑯면허번호	제 호	
	⑰대 표 자		⑱주 소		
사업 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개요	주 용 도		주요구조		
	세 대 수		층 수	지상( )층 / 지하( )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수수료 없음

제 호

사 용 검 사 필 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사용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18711민
'94.7.28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3호의2서식]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처리기간 7일
사업시행자	①상 호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 표 자		④주 소		
설계자	⑤상 호		⑥등록번호	제 호	
	⑦대 표 자		⑧주 소		
공사시공자	⑨상 호		⑩면허번호	제 호	
	⑪대 표 자		⑫주 소		
사업내역	승인일자		착공일자		
	사업위치		조성면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설치내역 별첨)			
	주 택 건 설 계 획				
	주택형별	세대당주택규모	동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수수료 없음

제 호

사 용 검 사 필 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18811민
'94.7.28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3호의3서식〕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1. 건축물의 내역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생략)

주 용 도					주 요 구 조						
세 대 수					층 수	지상( )층 / 지하( )층					
구 분	합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바닥면적(㎡)											
용 도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직통 계단					주차장 규모	대					
기 타											

2. 간선시설의 설치내역

시 설 명	승인내역	설치내역	시 설 명	승인내역	설치내역

3. 부대시설의 설치내역

시 설 명	승인내역	설치내역	시 설 명	승인내역	설치내역

4. 복리시설의 설치내역

시 설 명	승인내역	설치내역	시 설 명	승인내역	설치내역

30304-18911일
'94.7.28 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3호의4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처리기간 7일

사업시행자	①상 호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 표 자		④주 소	
공사감리자	⑤상 호		⑥등록번호	제 호
	⑦대 표 자		⑧주 소	
	⑨상주감리자		⑩보유자격	종류 번호
공사시공자	⑪상 호		⑫면허번호	제 호
	⑬대 표 자		⑭주 소	
사업위치				
승인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용 도		공 정		

임시사용신청	구 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신청부문							
	신청이외부문							
내용	합 계							
임시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승인번호 제 호

임 시 사 용 승 인 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5항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0304-19011민
'94.7.28 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식]·〔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3호의 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3호의4서식]"을 "〔별지 제33호의5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저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등이 아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5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6조제4항"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중 "예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치하여 증액된 청약예금의 순위기산일은 당초가입일로 본다"를 "예치하여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13조제1항제4호·제4항, 제21조 및 건설부령 제46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 개정이유 □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1994. 1. 7 법률 제4,72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이 규칙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이해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

나. 종전에는 입주자저축의 종류 및 청약예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하고, 청약예금의 가입한 자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5).

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결과에 따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결정통지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4항).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규모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주택의 규모를 당해 건축물중 주거용 전용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함(제18조의3).

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업주체의 파산·합병·등록말소·영업정지등으로 당해 사업주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및 전산확인등으로 생긴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업무실적과 감리원 보유현황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정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 〈건설부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